

# 國際環境法의 새로운 動向\*

盧明濬\*\*

< 차

례 >

## I. 서 론

## II. 국제기구의 최근동향

1.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2. 유엔환경계획(UNEP)
3. 국제사법재판소(ICJ)
4. 국제무역기구(WTO)

## III. 수질오염

## IV.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1. 오존층의 보호
2. 기후변화

## V. 자연자원의 보호

## VI. 생물다양성

## VII. 유해물질과 폐기물

## VIII. 환경손해에 대한 국가책임

## IX. 무역과 환경

## X. 결 론

## I. 序 論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간의 범인 국제환경법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의 일부로 취급되어 오다가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된 것이며 대한환경문제연구소 주최 제2회 환경문제 학술발표회(2002년 2월 21일 개최)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필자가 2001년 9월 독일 본(Bonn)에 있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부설 환경법센터 방문중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 이 센터 도서실의 이용을 허용해 준 F. Burhenne-Guilmin 박사의 호의에 심심한 사의를 표함.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비로서 독자적인 법으로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분야의 법에 비해서 그 역사가 매우 짧고 아직도 발전도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환경에 관련된 다자조약만도 350개가 넘고 이 분야의 양자조약은 1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국제회의, 정부간 국제기구(IGO) 그리고 비정부간 국제기구(NGO)사이에 체결된 선언, 결의, 행동계획 등의 형식까지 합한다면 실로 엄청난 규모에 달해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지구의 환경은 지금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국제하천의 수질오염 및 해양의 환경오염 등이 극히 위험한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지구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주로 구미를 중심으로 활발히 강구되어 왔다.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문제보다는 경제발전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우선순위를 두고 남·북진영간에는 커다란 시각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와서 국제환경법은 그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발전문제까지도 취급하게 되어 국제지속가능개발법이라는 용어가 더 타당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방대한 국제환경법의 모든 문제들을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최근 동향만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 II. 國際機構의 最近 動向

### 1. 持續可能한 開發에 관한 世界 頂上會議(WSSD)

2002년은 리우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된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간을 회고해 보면 각국간의 이해관계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차이로 말미암아 지구환경의 보전과 개발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하여 1997년 유엔환경특별총회는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일명 Rio+10)를 개최하여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이 회의의 의제설정과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그동안 수차례 걸쳐 개최된바 있다.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제1차 준비회의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2001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2002년 1월 뉴욕에서 제2차 준비회의가 개최되었고 제3차 준비회의가 역시 뉴욕에서 2002년 3월에 그리고 제4차 회의가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2002년 5월에 개최되었다.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준비회의에서는 2002년 8월에 개최될 요하네스버그회의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가 논의되었고 여성그룹, 산업계그룹, 과학기술그룹 등 주요 9개 그룹의 준비활동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이 회의는 향후 준비회의의 구체적 회의 진행방식에 합의하였고 WSSD회의에서 논의가능한 주요의제를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인식차이가 여실히 노출되어 회의 준비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sup>1)</sup>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8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준비회의의 목적은 의제21의 이행경과를 평가하고 제3차 준비회의에서 협상의 기초가 될 문서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중요 당사국간의 상호토론에 이어 제3차 준비회의에서 협상의 기초로 사용할 의장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네가지 문건은 제2차 준비회의 관련 의장의 요약보고서, 이해당사국간 대화에 관한 의장의 요약보고서, 의장 문서초안, 의제21의 이행강화를 위한 협력이니시어티브에 관한 제안이었다. 이 회의는 의제21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과거에 제기된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고 구체적·실천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한데 그쳤다.<sup>2)</sup>

2002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준비회의는 요하네스버그회의에서 채택될 의제21의 미진한 부분과 추가이행을 위한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의 구체적인 문안을 논의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요하네스버그회의에서 채택될 정치적 선언문, 행동계획, 파트너쉽/이니시어티브 등 세가지 문서 중 행동계획의 문안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이 행동계획의 타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회의에서 개도국들은 주로 신규 재원의 확보, 기술이전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의 설립 그리고 선진국 시장에의 용이한 접근 등을 요구하였으나 선진국들은 지구환경기금 등 기존의 신탁기금을 활용할 것과 특허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WIPO 등 기존의 메커니즘을 이용할 것을 주장하여

1) 외교통상부, 「지구환경정보」, 제41호(2001년 7월 23일), 5-7쪽.

2) 외교통상부, 위의 책, 제44호(2002년 4월 30일), 1-4쪽.

현격한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sup>3)</sup>

제4차 준비회의는 2002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준비위원장의 개정문서(Revised Chairman's Paper)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회의가 개최되어 사전 절충을 시도하였다. 발리회의에서 각국대표들은 요하네스버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요하네스버그회의의 회의진행 순서와 그 방식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 회의는 또한 살림(Salim)준비위원장에게 요하네스버그회의가 채택할 정치적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의 초안을 준비할 것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회의폐막전 3일동안의 철야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히 에너지, 무역, 재정 그리고 세계화와 같은 주요쟁점에 관하여 하등의 컨센서스를 도출하지 못하였다.<sup>4)</sup>

네번에 걸친 준비회의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추세를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양상이 현저하였다는 것이다. 개도국들은 빈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개발원조 등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선진국들은 이에 소극적이고 대신 국제환경관리체제의 도입, 지구온난화 문제, 오존층의 파괴, 생물다양성문제 등 지구환경보전에 더 관심을 가져 요하네스버그회의에서 각국의 의견절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는 예정대로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

---

3) 외교통상부, 위의 책, 4-6쪽.

4)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arth Negotiations Bulletin, vol. 22, no. 51, p. 2, <http://www.iisd.ca/linkages/2002/wssd>.

아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191개국의 정부, 유엔전문기구, 정부간 기구(IGOs), 비정부간 기구(NGOs), 민간단체, 학계에서 2만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인간, 지구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하는 이 회의는 1992년의 리우회의 이후 10년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정도를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요하네스버그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선언문(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claration<sup>5)</sup>)과 이행계획서(Plan of Implementation)<sup>6)</sup>를 채택하였다.

정치적 선언문인 요하네스버그선언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 및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우리 모두가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빈곤퇴치, 소비와 생산패턴의 변화, 그리고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인식하고 특히 생물다양성의 파괴, 어족 자원의 감소, 사막화, 지구 기후의 변화 등 세계환경의 악화를 개탄하였다. 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은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개도국이 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우리가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않는 한 그들은 민주체제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선언은 또한 인류의 유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각국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할 것을 역설하였다. 오늘날 깨끗한 식수, 위생, 에너지, 보건, 식량 확보, 생물다양성, 재원 확보, 시장개방, 기술이전, 인적자원의 개발, 교육 및 훈련 등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만성기아,

5) Report of the WSSD, U.N. A/CONF. 199/20, www.johannesburgsummit.org.

6) Ibid.

영양실조, 외국의 점령, 무력충돌, 마약, 부패, 테러, 종족간의 증오심, HIV/AIDS 등과 같은 전염병에 적극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다.

요하네스버그선언문은 여성의 권리와 해방 그리고 원주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진국에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적극 동참할 것을 역설하고 새로운 아프리카발전 파트너쉽(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과 같은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며 군소도서국가와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도 주문하였다. 그리고 이 선언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유엔과 국제법의 역할을 지지하고 마지막으로 의제 21(Agenda 21),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및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의 이행을 위한 모든 차원의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선과 강화를 강조하였다.

요하네스버그선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타협의 산물이나 특히 개도국의 입장을 크게 반영하였다. 이 선언문은 환경보전보다는 경제발전문제에 더 비중을 두어 환경에 관한 한 1972년의 스톡홀름 인간환경 선언은 물론 1992년의 리우 환경개발선언보다 크게 후퇴하였다. 이 선언문은 구속력있는 체계적인 법적인 문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국제환경법의 발달에는 크게 기여한바가 적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인류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가치가 인정된다 하겠다.

요하네스버그회의가 채택한 이행계획은 빈곤퇴치, 보건위생, 천연자원의 관리, 에너지, 수산자원의 보존, 세계화, 생물다양성 보전, 무역 등 향후 10년간 인류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5년까지 하루 수입 1달라

미만의 절대빈곤 인구와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개선하기 위하여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2015년까지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대하고 2020년까지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 이행계획은 또한 가능한 한 2015년까지 고갈우려가 있는 어족자원에 대하여 최대지속가능한 생산(maximum sustainable yield) 수준으로 유지 또는 회복하도록 하며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한 쿠토 의정서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상실추세를 대폭 감소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국제 레짐의 확립을 촉구하였다. 이행계획은 또한 선진국에 대해 GNP의 0.7%를 공적개발원조(ODA)로 개도국에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보조금의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세계화, 무역, 건전한 관리체제(governance),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틀과 전략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요하네스버그회의가 채택한 이행계획은 모두 54쪽, 153개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지 20년간 인류가 달성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행계획은 의제 21과는 달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구체적인 목표와 시한이 빠진 부분이 많아 알맹이가 없는 문서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요하네스버그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대립과 미국과 유럽 연합 등 대륙간의 입장차이로 이들의 주장을 철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각국간의 의견대립으로 회의는 이행계획의 문안에 합의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선진국이 주장하는 환경보전보다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어 환경론자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 회의는 리우선언과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과 같은 팔목 할 만한 성과를 얻는데 실패하여 “리우+10”이 아니라 “리우-10”이 되고 말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 2. 유엔環境計劃(UNEP)

유엔환경계획은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유엔의 보조기관이다. UNEP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지구의 환경보전활동을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지구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국제환경법의 발달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EP는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의 규제를 위한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최근에도 UNEP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EP는 1998년 9월 FAO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과 살충제의 국제적 거래에 대한 사전동의절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sup>7)</sup>의 체결을 주도하였다. 로테르담협약이라고 불리우는 이 협약은 수입국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적어도 두 나라가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를 그 국가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로테르담협약에 따라 조약당사국은 자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되

7) 38 I.L.M. 1(1999).

는 특정 화학물질 및 유해성이 높은 농약을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유해물질이 협약의 사전통보동의 절차(PIC절차)의 대상물질로 지정되면 수출을 위해서는 수입당사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물질의 수출국은 수입국이 지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당사국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이 협약은 또한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개도국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상 사전통보동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물질은 농약 22종을 비롯하여 모두 27종의 유해화학물질들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0년 1월 생명공학 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가 채택되는데 있어서도 UNEP가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악영향을 줄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과 취급 및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sup>8)</sup>

### 3. 國際司法裁判所(ICJ)

국제사법재판소는 1997년 9월 25일 가브치코보 · 나기마로스사건(Gabcikovo-Nagymaros Case)<sup>9)</sup>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환경법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양국의 국경을 형성하는 다뉴브강에 공동으로 댐을 건설하는 문제로 일어난 분쟁이다. 헝가리는 체코슬로바키아와 1977년 조약을 체결하고 1978년부터 다뉴브강에 댐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공사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비난

8) 이 협약의 내용은 후술하는 제6장 생물다양성에서 상술하겠음.

9) 37 I. L. M. 162(1998).

이 야기되자 헝가리는 1989년 10월 일방적으로 이 공사를 중지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단독으로 이 공사를 강행하자 헝가리는 1992년 5월 양국간의 조약을 폐기하고 슬로바키아를 재판소에 제소하였다. 1997년 재판소는 헝가리는 댐공사를 중지할 권리가 없으며 1977년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슬로바키아도 단독으로 댐 공사를 강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1977년의 조약이 아직도 유효하므로 양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부언하였다. 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양국이 이 분쟁을 교섭에 의하여 해결할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1998년 9월 슬로바키아는 헝가리가 교섭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소에 다시 제소하였다. 그후 이 문제를 양국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 지금 계류중인 이 사건에 대해 재판소는 2002년 10월 현재 아직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sup>10)</sup>

2001년 6월 19일 상설중재재판소의 94개 회원국은 환경분쟁에 적용될 중재재판의 선택규칙(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of Disputes Relating to Natural Resources and/or the Environment)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환경분쟁에 적용될 이 선택규칙은 유엔 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UNCITRAL)중재규칙에 기초하여 중재재판에 의한 국제환경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NCITRAL규칙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이 선택규칙은 국가뿐만 아니라 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기구, 다국적 기업 및 개인이 국제환경분쟁을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경우 적

10)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Charles B. Bourne, "The Case Concerning the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An Important Milestone in International Water Law," in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8, 1997, pp. 6-12; Alan E. Boyle, "The Gabčíkovo-Nagymaros Case: New Law in Old Bottles," in *YIEL*, ibid., pp. 13-20.

용될 것이다. 이로서 국가간의 환경분쟁을 정식 사법재판이 아니라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선택규칙은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간보호조치(Interim Measure of Protection)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6조) 자연자원과 환경법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재판관 패널(제8조 3항)과 환경과학에 능통한 전문가패널(제27조 5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패널은 상설중재재판소 회원국과 재판소 사무총장에 의하여 지명되며 중재재판시 당사국이 이 중에서 선임하여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관련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이 선택규칙은 과거의 상설중재재판소 선택규칙이나 UNCITRAL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중재재판을 진행할 수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당사국이 재판관 구성에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UNCITRAL의 경우 임명권자를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환경분쟁사건에서는 사무총장이 직접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은 중재재판소를 신속히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선택규칙은 또한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4항, 5항, 6항).

#### 4. 世界貿易機構(WTO)

세계무역기구는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Marrakesh)에서 조인된 세계무역기구설치협정과 기타 관련협정에 의하여 1995년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WTO는 그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를 설치하고 환경과 무역과의 연계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1995년이래 정기적으로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1995년 개최된 첫 번 회의에서 CTE는 다자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와 WTO규범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작업계획으로 10개의 의제를 선정하였다. 즉 다자환경협약의 무역규제조치와 WTO 자유무역제도와의 관계,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책과 다자무역체제와의 관계, 환경목적의 부과금과 세금 및 상품요건과 다자무역체제와의 관계,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조치의 투명성에 관한 다자무역체제규정, 환경조치가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제한·왜곡곡조치의 제거가 미치는 환경적 이익, 다자무역체제의 분쟁해결메커니즘과 다자환경협약상 분쟁해결메커니즘과의 관계, 국내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상품의 수출 문제,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협정과 환경과의 관계, 서비스무역과 환경보전간의 상호작용, 정부간·비정부간 기구들과의 관계 등 10개의 의제를 선정하였다. 1996년 CTE는 싱가폴에서 개최된 WTO각료이사회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95년이래 이 CTE의 계속된 회의에서 10개의 의제에 관하여 많은 제안이 제출되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지금까지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0개 의제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는 다자환경협약상 무역규제조치와 다자무역체제와의 관계, 환경목적의 부과금 및 세금과 다자무역체제와의 관계, 환경마크(eco-labelling)와 다자무역체제와의 관계, 환경조치가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과 환경과의 관계 등이다.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은 우선 환경협약상 무역조치와 WTO체제와의 관계이다. 이에 대한 1996년 WTO각료이사회 보고서의 잠정

결정은 일방적 무역규제조치를 지양하고 국제적인 합의에 근거하여 다자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sup>11)</sup> 환경관련협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과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GATT규정을 개정하여 환경보전 목적의 무역제한조치를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이 환경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무역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와 환경마크(eco-labelling)와 환경목적의 부과금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각국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CTE의 회의과정에서 각국의 의견이 크게 대립되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각국이 범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정치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CTE의 업무계획은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과의 연관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망라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환경보전 조치가 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논의하면서도 무역자유화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세번째 이유는 WTO활동의 주요목적이 환경보전이 아니므로 WTO내에서 CTE의 위상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CTE내 북쪽의 선진국과 남쪽의 개도국간의 이해관계의 대립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2)</sup>

11)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2) Richard G. Tarasofsky, "The 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Is it Making a Difference?", Max Planck Yearbook of U. N. Law, vol. 3, 1999, pp. 484-488.

### III. 水質汚染

해양오염과 달리 국제하천의 수질오염에 관하여 범세계적인 국제 협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유엔의 국제법위원회는 1971년 국제수로의 非航行的 사용에 관한 문제를 法典化사업의 일부로 포함시켜 법전화사업을 진행하였다. 국제법위원회는 1994년 이 법전화사업을 완성하였고 유엔회원국의 논평과 의견을 종합한 후 유엔총회는 1997년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sup>13)</sup>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국제법협회(ILA)가 1966년 헬싱키총회에서 확립한 헬싱키규칙 이후 국제수로에 관한 국제법을 최초로 성문화한 것이다. 이 협약은 전문과 서론부문, 5개의 본문부문, 그리고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원칙을 규정한 제2부의 제5조는 “공평한 사용의 원칙”(Principle of Equitable Utilization)을 선언하고 있다. 국제하천의 모든 유역국은 자국영토내에서 국제수로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유역국은 국제하천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 보호와 개발에 있어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유역국은 국제수로를 사용함에 있어 다른 유역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sup>14)</sup> 국제수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sup>15)</sup> 또한 유

13) 36 I.L.M. 700(1997).

14) 협약 제7조.

15) 협약 제8조.

역국은 국제수로의 상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sup>16)</sup> 유역국은 계획하고 있는 조치가 국제수로의 상태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상호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sup>17)</sup> 댐의 건설과 같이 타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미리 다른 유역국에게 적시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에 관한 기술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up>18)</sup>

이 협약 제4부는 국제수로의 생태계의 보호와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역국은 다른 유역국의 환경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방지하고 감축하여야 한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조치와 방법에 상호 합의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sup>19)</sup> 유역국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외부 생물종(species)을 국제수로에 유입시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취하여야 한다.<sup>20)</sup> 이 협약은 모든 유역국에게 국제수로의 공동관리메커니즘의 설립을 위하여 서로 협의할 의무를 과하고 있다.<sup>21)</sup>

이 협약은 국제하천에 관한 최초의 범세계적인 다자조약으로서 수자원의 공동사용을 위한 관리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 협약은 기본원칙만을 규정한 일종의 골격협약으로서 구체적인 분쟁사례에 적용되기에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

16) 협약 제9조.

17) 협약 제11조.

18) 협약 제12조.

19) 협약 제21조.

20) 협약 제22조 및 제23조.

21) 협약 제24조.

## IV. 大氣污染과 氣候變化

### 1. 오존층의 보호

오존층의 보호를 위해 1985년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이 채택된 바 있다. 그런데 이 협약은 오존층 파괴의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의 실시,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와 정보교환 등 추상적인 일반원칙만을 규정한 골격협약으로서 이 협약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미흡하여 오존층을 소실시키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가 1987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프레온가스(CFC)나 할론가스(Halon Gas)와 같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을 동결 또는 감소시켜 오존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의정서는 오존층의 보호를 위해 규제 물질의 선정, 규제일정의 채택,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 등을 규정하여 비엔나협약의 미비성을 보완하였다.

몬트리올의정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0년 런던, 1992년 코펜하겐, 1995년 비엔나, 1996년 산호제改正이 각각 채택되어 규제대상을 확대하거나 감축내지 금지시한을 앞당기는 등 제반조치가 이루어졌다.

의정서 제9차 당사국총회가 1997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메틸부로마이드의 개도국 全廢일정을 2005년까지 20%, 그리고 2015년까지 100%로 확정하였으며 2010년까지 전폐하기로 되어 있던 선진국의 일정을 2005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규제물질의 수출입 허가제도를 2000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고 선진국내에서 신규 생산 프레온가스의 시장거래를 금

지시키기로 하였다.<sup>22)</sup> 1998년 11월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할론가스와 같은 오존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오존 파괴물질이 함유된 제품 및 장비에 대한 규제와 개도국의 오존 파괴물질 규제로 인한 손해보전을 위한 지원 등을 결정하였다.<sup>23)</sup> 제11차 당사국총회는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HCFC의 생산량을 선진국은 2004년 1월부터 그리고 개도국은 2016년부터 동결하도록 결정하였고 메틸브로마이드의 무제한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브롬클로로메탄의 사용을 2002년부터 금지하는등 오존총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sup>24)</sup> 의정서의 제12차 당사국총회는 2000년 12월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HCFC의 개도국 소비량 감축일정의 단축조정문제, CFC가 포함된 천식용 흡입제(Metered Dose Inhaler;MDI)의 CFC불포함 MDI로의 촉진방안, 오존총 파괴물질 및 이 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폐기 및 분해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개도국의 강한 반대로 HCFC의 개도국 소비량감축 기준연도를 10년 앞당기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고 2003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CFC불포함 MDI로의 전환문제에 관하여 선진국은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전환전략 방안을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도국은 2005년 1월 31일까지 그 전략을 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을 장려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선진국의 메틸브로마이드의 국가생산에 관한 북경조정의 수정문제는 공식 조정보다는 결정(XII/1)이라는 형식으로 채택하였다.<sup>25)</sup>

22) 외무부, 「지구환경정보」, 제21호(1997년 9월 30일), 6-7쪽.

23) 외교통상부, 위의 책, 제29호(1998년 12월 8일), 4-5쪽.

24) 외교통상부, 위의 책, 제36호(2000년 1월 5일), 25-27쪽.

25) 외교통상부, 위의 책, 제39호(2000년 12월 30일), 17-19쪽.

## 2. 氣候變化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골격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제1차 당사국회의가 1995년 베를린에서, 제2차 당사국회의가 1996년 제네바에서, 그리고 제3차 회의가 1997년 일본의 쿠토에서 개최되었다. 쿠토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부속 쿠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sup>26)</sup>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대기에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서 지구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간섭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한 5%를 감축하고 각국별 감축목표는 차등적으로 설정하였다. 예컨대 유럽연합국가들은 이 기간동안 8%, 미국은 7%, 일본과 캐나다는 각각 6%, 오스트레일리아는 8%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 의정서는 감축대상 가스를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 등 6개 가스로 정하고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sinks)에 의한 순배출량의 변화를 감축 목표 이행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개도국은 이러한 감축의무에서 면제되었고 이들 국가의 협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과 재원제공을 규정하였다.

куто의정서는 또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의무 이행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도와 공동이행제도 그리고 청정개발체제를 채택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란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한 뒤에 각국에 일정량의 쿼터를 부여하고 이 쿼터를 초과하는 국가에게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반대로 이

26) 37 I.L.M. 22(1998).

쿼터에 미달되는 국가에게는 잉여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System)란 일국이 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노력을 지원한 경우 여기서 감축된 배출량의 일정량을 자국의 배출 감축량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선진국이 개도국과 공동이행을 통하여 얻어진 배출감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쿄토의정서는 이 경우 선진국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것을 청정개발체제의 운영비와 개도국의 기후변화에의 적응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1998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회의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대립되어 온 사안들을 일괄타결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이 행동계획에는 협약의 재정문제,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개도국 보상문제, 시범사업기간중 공동이행, 의정서 메커니즘, 쿠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 준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일정이 포함되어 있다.<sup>27)</sup>

1999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5차 당사국회의는 3개 쿠토메카니즘(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 주요 쟁점 사안들과 관련된 실질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차기 당사국회의까지의 작업일정에만 합의하는 데 그쳤다. 다만 아르헨티나의 온실가스 감축발표를 계기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문제가 부각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소득이었다.<sup>28)</sup>

27) 외교통상부, 앞의 책, 제29호(1998년 12월 8일), 1-4쪽.

28) 외교통상부, 위의 책, 제35호(1999년 12월 8일), 1-3쪽.

협약 제6차 당사국회의는 2000년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쿠토의정서의 운영규정을 확정시키려 하였으나 각국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렇다할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이로서 2002년까지는 의정서의 발효를 추진하려던 당사국의 노력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sup>29)</sup>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어느정도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쿠토의정서의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시켰고 의무준수 절차 및 체제에 관한 문안을 잠정적으로 채택하되 의정서 발효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당사국회의에서 이 문안을 최종 채택하도록 권고하였다.<sup>30)</sup>

기후변화협약과 쿠토의정서가 실제로 지구 온난화의 방지를 위하여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위인 미국의 참여가 없으면 쿠토의정서는 무의미하다. 클린턴대통령시절 미국이 비록 이 의정서에 조인하였으나 부시대통령이 취임한 후 2001년 3월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탈퇴하자 이 의정서의 장래가 불투명해졌다. 미국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은 국가중의 하나인 러시아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두나라의 참여 없이 온실가스의 감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기여도와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부담문제를 사이에 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갈등도 쿠토의정서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이 쿠토의정서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효과적인 제재방법이 없어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sup>31)</sup>

29) 외교통상부, 위의 책, 제39호(2000년 12월 30일), 9-11쪽.

30) 외교통상부, 위의 책, 제43호(2002년 1월 15일), 8-11쪽.

31) Rudolf Dolzer and Charlotte Kreuter-Kirchhof, "Climate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Rudolf Dolzer and Josef Thesing(eds.), Protecting Our Environment, 2000, pp. 50-52. 기후변화협약과 쿠토의정서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Wolfgang Durn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Archiv des Voelkerrechts, vol. 37, 1999, p. 357 참조.

## V. 自然遺產의 保護

2001년 11월 2일 유네스코총회는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up>32)</sup>을 채택하였다. 전문, 35개조의 본문, 그리고 36개조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협약은 해저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에 관한 활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협약은 수중문화유산을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최소한 100년동안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수중에 있는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가진 인간의 모든 흔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저에 있는 파이프라인과 전선 그리고 그 이외의 시설물로서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중문화유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sup>33)</sup>

당사국은 수중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자국의 능력에 맞는 가장 최선의 실행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수된 유산은 장기보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주권면제에 관한 국제법 규칙과 국가관행, 그리고 국가선박과 항공기에 관한 국가의 권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sup>34)</sup>

해난구조법(law of salvage)과 발굴물법(law of finds)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수중문화유산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되어서는

32) 41 I.L.M. 40(2002).

33) 협약 제1조 1항.

34) 협약 제2조.

안된다.<sup>35)</sup> 당사국은 수중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양자, 지역적 또는 다자조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협정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협약 이전에 체결된 조약상 침몰선의 보호에 관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수 없다.<sup>36)</sup>

이 협약은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관할권에 관하여 내수, 군도수역,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그리고 심해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내수, 군도수역, 그리고 영해와 접속수역에 있어서는 당사국인 연안국이 수중문화유산에 관한 활동을 규제하고 허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국은 이 수역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부속서에 규정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sup>37)</sup>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자국민이나 자국선박이 수중유산을 발견하거나 이에 관한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국민이나 선장은 이를 자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발견 및 활동에 대해서는 자국민 또는 선장이 자국이나 타당사국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sup>38)</sup> 이 수역에서의 활동은 제10조의 규정에 합치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권리 행사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금지하거나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수중유산에 대하여 이익을 선언한 모든 타당사국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협의에 조정국(coordinating state)으로서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국은 약탈을 포함한 수중유산에 대한 즉각적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sup>39)</sup>

---

35) 협약 제4조.

36) 협약 제6조.

37) 협약 제7조 및 제8조.

38) 협약 제9조.

39) 협약 제10조.

심해저에서 수중유산을 발견하거나 이에 관한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국은 자국민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유네스코 사무총장 또는 국제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즉시 이 정보를 모든 당사국에게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sup>40)</sup>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군함 및 기타 정부 선박, 또는 군용항공기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 수중유산의 발견에 대한 보고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당사국은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작전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통보와 보호의무가 준수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sup>41)</sup>

당사국은 불법으로 수출되었거나 이 협약에 반하여 회수된 수중유산을 자국내에 반입, 거래, 또는 소유함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sup>42)</sup> 자국의 영토가 이 협약에 반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up>43)</sup>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를 위반한데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sup>44)</sup> 또한 불법으로 회수된 유산이 자국영토내에 있는 경우 이를 압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 보호 및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up>45)</sup>

유엔 해양법협약이 수중문화유산에 관한 일반법(*lex generalis*)이라면 이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은 그 특별법(*lex speciales*)이라고 볼 수 있다. 수중유산협약은 해양법협약 제149조와 제303조의 일반적이고 막연한 내용을 보완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이 협약

40) 협약 제11조.

41) 협약 제13조.

42) 협약 제14조.

43) 협약 제15조.

44) 협약 제17조.

45) 협약 제18조.

은 수중문화유산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높은 수준의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수중유산에 관한 해양법협약의 미약하고 불충분한 규칙을 보충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점에서 수중유산협약은 해양법협약의 이행협약이라고 볼수 있다.<sup>46)</sup>

## VI. 生物多樣性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된 일종의 골격협약으로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일반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리하여 협약당사국들은 당사국회의를 통하여 협약의 이행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하여 왔다. 1994년 바하마에서 제1차 당사국회의가 개최된데 이어 제2차 당사국회의는 1995년 11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생명공학 안전성의정서(Protocol on Biosafety)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개시를 결정하고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sup>47)</sup>

생명공학 안전성의정서를 체결하기 위한 첫번째 실무회의는 1996년 7월 덴마크의 아루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의 혜택측면을 강조하는 선진국과 그 위험성을 강조하는 개도국간에 의견

46) Guido Carducci, "New Developments in the Law of the Sea: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96 A.J.I.L. 419(2002), at 420-421.

47) 외무부, 위의 책, 제2호(1995년 12월 15일), 1-2쪽.

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선진국은 생명공학기술의 혜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정서상의 무역규제조치가 WTO의 자유무역원칙과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개도국은 자국이 선진국이 개발한 생명공학 제품의 시장화와 실험대상화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제품의 교역으로 인한 제반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생명공학제품의 국가간 교역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에 의견이 크게 대립되었다.<sup>48)</sup> 1998년 2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4차 실무회의는 의정서초안을 마련하였으며 1998년 5월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스라바에서 개최될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sup>49)</sup>

2000년 1월 29일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회의는 생명공학 안전성의정서(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sup>50)</sup>를 채택하였다. 이 의정서의 목적은 환경에 위해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의 국가간 교역시 인체건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sup>51)</sup>

이 의정서는 우리나라와 EU와 같은 농산물수입국의 주장을 반영하여 사전예방적 접근 및 원칙(Precautionary approach and principle)을 도입하였다. 즉 식용, 사료용, 가공농산물 등의 LMOs가 자국의 인체건강이나 환경에 심한 위협이 되는 경우 비록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수입국은 사전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정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수출용과 식용·사료용·가공용

48) 외무부, 앞의 책, 제10호(1996년 8월 20일), 7-8쪽.

49) 외교통상부, 앞의 책, 제24호(1998년 3월 16일), 6-8쪽.

50) 39 I.L.M. 1027(2000).

51) 인체의약품(pharmaceuticals for humans)용 LMO는 의정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의정서 제5조).

으로 구분하고 수출용의 경우 교역시 사전통보합의절차(Advanced Informed Agreement Procedure)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수입국이 자체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2)</sup>

의정서는 또한 수입국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up>53)</sup> 즉 수출용인 경우, 취급, 포장, 운송시에 그 선적서류에 “유전자변형생물체(LMO)임”을 명기하고 그 특성과 성분 등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식용, 사료용, 가공용의 경우에는 “LMO를 포함할 수도 있다”(may contain LMO)는 점을 명기하도록 하고 특성, 성분 등 상세한 사항은 의정서 발효후 2년내에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정서 규정에 따라 수입국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제도 (consumer labelling system)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의정서는 개도국의 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을 위하여 당사국이 이들을 지원해줄 것을 규정하였고<sup>54)</sup>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이에 관한 각국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제공소”(Biosafety Clearing House)를 설립할 것을 규정하였다.<sup>55)</sup>

## VII. 有害物質과 廃棄物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는 1989년 채택된 유해물질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52) 의정서 제7조 1항.

53) 의정서 제18조.

54) 의정서 제22조.

55) 의정서 제20조.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이 있다. 이 협약은 당사국에게 유해폐기물의 생산과 국가간 이동을 최소화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 이러한 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이동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협약은 사전통고동의절차(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교역을 규제하고 있다.

바젤협약당사국은 계속적인 당사국회의를 통하여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199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협약당사국회의는 OECD국가에서 비OECD국가로의 최종처리용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즉각 금지시키고 1998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Ban-Amendment). 1998년 말레이시아의 쿠칭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회의는 협약의 부속서를 개정하고 폐기물의 목록을 도입하였다. 또한 폐기물 리스트 A와 B를 각각 부속서 8과 부속서 9로 채택하였다.

1998년 9월 11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유해화학물질과 살충제의 국제거래시 사전통고동의절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sup>56)</sup>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유해화학물질과 살충제에 의하여 초래되는 피해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는데 기존의 자발적인 사전 통고동의절차를 강제규범화하였다.

이 협약상 사전통고동의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물질은 DDT 등 농약 22종을 비롯하여 유해화학물질 5종, 모두 27종의 유해물질이다. 그

---

56) 38 I.L.M. 1(1999).

러나 마약성 약품, 방사성 물질, 폐기물, 화학무기, 의약품, 식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sup>57)</sup>

당사국은 자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살충제를 사무국에 통고하고 이러한 물질의 사전통고동의절차 포함을 위한 제안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국의 통보에 따라 화학심사위원회(Chemical Review Committee)는 이러한 물질이 이러한 절차의 대상물질인가를 결정한다. 당사국회의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절차 대상 물질리스트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sup>58)</sup> 수출국은 사전에 수출국에서 금지하거나 심히 제한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수입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물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수입국이 수입에 동의하지 않은 물질은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수출국은 이를 수출하여서는 안된다. 수입국은 또한 이러한 물질을 내수용으로 생산하여서도 안되고 비당사국에 수출하여도 안된다.<sup>59)</sup>

이 협약은 당사국 상호간의 화학물질 안전상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유해물질에 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법적 정보, 국내 규제조치에 관한 공지된 정보, 유해물질의 사용을 심히 제한하는 국내규제조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sup>60)</sup> 당사국은 또한 개도국에게 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sup>61)</sup>

DDT,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은 1998년

57) 협약 제3조. 협약의 적용대상 물질은 제3부속서에 열거되어 있다.

58) 협약 제5조 및 제6조.

59) 협약 제10조 및 제11조.

60) 협약 제14조.

61) 협약 제16조.

부터 시작되었다. 이 해에 제1차 협상회의가 개최된 후 도합 5차의 협상 회의가 개최되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 결과 2001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스톡홀름회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협약(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sup>62)</sup>을 채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협약은 지구생태계에 장기간 잔류하면서 인간의 체내에 축적되어 암이나 기형 등을 유발하는 다이옥신, DDT 등 12개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sup>63)</sup>의 생산과 사용의 금지 및 수출입의 제한을 국제적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 (environmentally sound disposal)와 협약이 인정하는 사용과 목적을 위해서만 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sup>64)</sup> 협약당사국은 이러한 물질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비축하여야 하며 이러한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운송되고 보관되며 또한 폐기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up>65)</sup> 당사국은 협약의 신규 적용대상물질을 사무국에 제안할 수 있으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view Committee)는 타당성이 있는 경우 당사국회의에 그 적용대상물질에 추가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sup>66)</sup>

당사국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생산과 사용의 저감과 철폐를 위한 정보와 그 대체물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sup>67)</sup> 그의 근절과 배출저감을 위한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sup>68)</sup>

62) 40 I.L.M. 532(2001).

63) 유기염소계 농약(DDT, 알드린, 클로르단 등), 유기염소계 화합물(다이옥신, PCBs, Furun 등), 유기브롬계 화합물(HBDs, 디브로모에탄), 다환방향족 탄화수 소류 등 12종.

64) 협약 제3조.

65) 협약 제6조.

66) 협약 제8조.

67) 협약 제9조.

68) 협약 제11조.

## VIII. 環境損害에 대한 國家責任

유엔의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는 1978년 제30회기 회의에서 “국제법이 금지하지 않는 행위에서 발생한 피해에 의한 국가책임”(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을 작업계획에 포함시키고 뉴질랜드의 퀸틴 백스터(Robert Q. Quentin-Baxter)위원을 특별보고자로 임명하였다. ILC는 제32회기(1980년)부터 제36회기(1984) 까지 특별보고자가 작성한 5개의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ILC는 1984년의 제5차 보고서 수록된 5개의 조문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별 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ILC는 1985년 바르보자(Julio Barboza)를 새롭히 특별보고자로 임명하였고 그는 제37차 회의(1985년)부터 제48차 회의(1996년)까지 모두 12개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997년 설립된 작업그룹은 ILC의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재설정하고 “방지”와 “책임”문제를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LC는 1997년 “有害한 활동으로 인한 越境 손해의 방지”(Prevention of transboundary damage from hazardous activities)라는 제목하에 “방지”문제를 먼저 심의하기로 결정하였고 라오(Pemmaraju Sreenivasa Rao)위원을 새롭히 특별보고자로 임명하였다. 제50차 회기(1998년)에 ILC는 “방지”에 관한 17개의 조문안을 채택하고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53차 회기(2001년)에 기초위원회(Drafting Committee)의 심의를 거쳐 2001년 5월 11일 19개 조문초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고 유엔총회에 회부하였다. 이 초안에 대한 주석서(commentaries)는 2001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개최된 일련의 회의에서 최

종적으로 채택되었다.<sup>69)</sup>

전문과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유해한 활동으로 인한 越境 손해의 방지 조문초안”(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sup>70)</sup>은 ILC가 23년간의 노력 끝에 채택한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범세계적 조약초안이다.<sup>71)</sup>

조문초안 제3조는 오염발생국(state of origin)은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 제21조에 구현되어 있는 “제한적 영토주권의 원칙”(sic utere tuo ut alienum non laedas)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ILC조문초안의 근간이 되는 대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오염발생국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가지고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는 관계국은 서로 성실히 협조하고 필요하면 오염방지와 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격이 있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톡홀름선언 제24원칙과 리우선언 제7원칙은 이미 협력이 환경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선언한바 있다. 관계국은 이 조

69) [www.un.org/law/ilc/convents.htm](http://www.un.org/law/ilc/convents.htm), pp. 366-370.

70) Ibid., pp. 370-436.

71) 이 초안의 심의경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Alan E. Boyle, "State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A Necessary Distinctio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39, January 1990, p. 1; Louise de la Fayette, "The ILC and International Liability: A Commentary,"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6, no. 3(1997), p. 322; Christian Tomuschat,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 F. Francioni and T. Scovazzi(ed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Harm*(1991), pp. 37-72.

문초안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시메커니즘을 포함한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기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제5조). 이 조문초안의 범위안에 있는 활동, 그 활동의 주요 변경, 그리고 그 활동의 변경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오염발생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6조) 오염방지 활동의 승인결정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가능한 월경피해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제7조). 사전평가 결과 심각한 월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오염발생국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예상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입수한 기술적 기타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제8조). 관계국은 월경피해 방지를 위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관련된 요소<sup>72)</sup>를 참작하여 이익의 공평한 균형(equitable balance of interests)에 기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제9조). ILC 초안은 그 밖에 정보의 교환<sup>73)</sup>, 일반에 대한 환경보전활동과 오염위험 공지,<sup>74)</sup> 국가안보와 산업비밀관련 정보의 공개유보,<sup>75)</sup> 재판이나 기타절차에 있어서 국적이나 피해발생지에 따른 차별금지,<sup>76)</sup> 응급 대응계획<sup>77)</sup>과 응급상황의 통지,<sup>78)</sup> 분쟁해결<sup>79)</sup>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3년에 걸친 노력끝에 작성한 이 ILC조문초안은 국제협약, 국내법, 선언문, 행동규약, 결의안 등에 나타나 있는 일반원칙을 처음으로 성문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관련

72) 관계국이 참작할 요소로는 오염으로 인한 위험의 정도와 그 방지수단의 존재여부, 방지활동의 중요성, 환경에 대한 피해위험, 당사국의 방지비용 부담 정도, 방지 기준 등이다.

73) 제12조.

74) 제13조.

75) 제14조.

76) 제15조.

77) 제16조.

78) 제17조.

79) 제19조.

문제해결에 매우 중요한 책임과 배상문제를 제외하고 오염방지에 관한 일반원칙만을 성문화한데 불과하여 알맹이가 없는 반쪽 문서가 되고 말았다.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책임과 배상문제에 관한 국제 환경규범도 또한 성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1999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의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협약 제5차 당사국회의는 그동안 정부간 협상을 통하여 논의되어 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배상의정서(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sup>80)</sup>를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불법거래를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또는 처리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용된다. 폐기물이 수출국의 영토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된 후부터 이 의정서가 적용되며 중간 처리 및 저장 등의 목적을 제외한 폐기물의 경우에는 처리 종료 통보시 또는 처리 종료시(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적용이 종료된다.

이 의정서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수입국 만이 당사자인 경우(수출국은 비당사국) 폐기물의 처리자가 인수한 시점부터, 수출국만이 당사자인 경우(수입국은 비당사국)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할 때까지, 그리고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가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는 이 의정서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니나 다자 또는 지역적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경유국인 군소도서국가<sup>81)</sup>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적용된다. 국내법상 지정한 유해폐기물의 경우에는

80) [www.basel.int/pub/Protocol.html](http://www.basel.int/pub/Protocol.html).

81) 예컨대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쿠바, 키프로스, 도미니카 공화국, 피지, 아이티, 쟈マイ카, 몰타,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아,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군도, 티리니다드와 토바고 등 39개국.

수입국 수출국 또는 양국이 사무국에 통보한 폐기물인 경우와 사고가 경유지를 포함하여 유해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 의정서가 적용된다.<sup>82)</sup>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주체에 관하여 의정서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할 때까지는 폐기물의 수출시 통보하는 자(주로 수출자)가 부담하며 처리자가 인수한 후부터는 그 처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자가 인수할 때까지 수출자가 책임을 진다. 수입국만이 국내법상 유해물질로 지정한 경우, 수입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할 때까지 책임을 진다. 폐기물이 계약대로 처리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자가 재수입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며 불법교역인 경우에는 재수입자가 책임을 진다.<sup>83)</sup>

책임배상의 금전적 한계는 부속서 B에 규정되어 있다. 부속서는 무과실책임에 대해서는 폐기물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하되 최고 3천만 SDR(IMF의 Special Drawing Right)까지 배상을 하기로 하고 과실책임에 대해서는 무한책임배상을하도록 규정하였다.<sup>84)</sup>

폐기물의 수출·통지자와 처리자는 부속서 B 제2항이 정하는 최소금액 이상으로 책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보험, 보증금, 그 밖의 재정보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은 인정하나 당사국이 직접소송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탁자(depositary)에 통보하여야 한다.<sup>85)</sup>

---

82) 협약 제3조.

83) 협약 제4조.

84) 통지자와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대해서는 폐기물량이 5톤이내인 경우 1백만 SDR, 25톤이내인 경우 2백만 SDR, 50톤이내의 경우 4백만 SDR, 1000톤이내인 경우 6백만 SDR, 1만톤이내의 경우 1천만 SDR, 1만톤이상의 경우 1톤 초과당 1천 SDR이 추가되며 최고 3천만 SDR까지 부과한다. 처리자에 대해서는 한 사고당 2백만 SDR이상을 부과한다.

85) 협약 제14조.

## IX. 貿易과 環境

오늘날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환경협약과 각국의 국내법에 무역 제한조치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의 자유화를 표방하는 GATT/WTO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것을 우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보전과 자유 무역의 조화문제가 오늘날 심각한 논쟁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분쟁해결패널은 "새우 및 새우관련상품의 수입금지사건"(U.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sup>86)</sup>에서 미국의 국내법과 GATT규정 충돌시 어느것이 우선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이 바다거북보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새우를 채취한 경우 이 새우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公法 101-162호(Public Law 101-162) 제609조가 GATT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은 미국을 WTO패널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1973년 멸종위기에 있는 종에 관한 법(US Endangered Species Act)을 제정하고 미국연안에 있는 바다거북을 이 법이 보호하는 멸종위기에 있는 종에 포함시켰다. 1987년 미국은 이 법에 따라 새우트롤업계가 거북제외장치(Turtle exclude device; TEDs)를 사용하여 새우를 채취하도록 하는 규칙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1989년 미국은 공법 101-162호 제609조를 제정하고 바다거북보존에 악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채취된 새우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1996년 4월 미국 국무부는 미국 국제무역재판소(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가 1995년 12월에 내린 명령에 순응하기 위하여 개정지침(revised guidelines)을 발표하고

---

86) 37 I.L.M. 832(1998).

제609조가 모든 국가에서 채취된 새우에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타국도 미국과 같은 거북제외장치(TEDs)를 사용하여 새우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인도 등 4개국은 이러한 미국의 행위가 GATT(1994) 제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1998년 5월 15일 WTO패널은 미국공법 제609조가 할당제(quota), 수출입허가, 기타조치에 의한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GATT 제11조 1항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미국의 새우수입 금지행위가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적 무역제한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GATT 제20조 전문(chapeau)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有限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인 경우 GATT상 의무에 대한 일반적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GATT 제20조 b항과 g항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1998년 10월 2일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미국의 새우 수입금지조치가 GATT규정들에 위반된다는 패널의 5월 15일자 판결을 지지하였다.<sup>87)</sup>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은 패널과 달리하였다. 즉 미국의 행위가 제20조 b항과 g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제20조 전문의 요건에 해당되는가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상소기구는 외국의 생산 및 공정방식(Production and Process Methods: PPMS)에 근거한 무역제한조치를 무조건 불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조치에 제20조 g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sup>88)</sup> 그러나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적 무역제한조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제20조의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의

87) 38 I.L.M. 118(1999).

88) Nancy L. Perkins, "Introductory Note", ibid, p. 119.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미국은 일방적인 금지조치를 취하기 전에 바다거북 보호에 관한 타국의 개별적인 사정과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호조치에 합의하기 위하여 타국과 양자적 또는 다자적 협상을 진행하기를 게을리하여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자국의 기준을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타국에 강요하려고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다음 상소기구는 미국의 영역밖에 있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도 제20조 g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하여 일국의 영역밖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에 무조건 모두 반대하지 않았다. 상소기구의 이와 같은 입장은 앞으로 일국의 영역밖의 환경보전을 위해 PPMs을 이유로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PPM방식에 근거한 무역제한조치에 반대하고 있어 상소기구의 이러한 입장은 PPM방식에 의한 무역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의하여 하나의 선례로 악용될 가능성 있다.

## X. 結 論

지금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환경법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를 시작으로 형성된 이 분야는 지금 독립된 학문분야로 지위를 굳히고 있다. 이 분야에 관한 국제협약, 국내법, 선언, 결의 등이 속속 제정되고 있어 그 내용은 우리가 미처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오늘날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특히 부유한 선진공업국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개도국간의 이익충돌은 국제환경법의 발달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지구환경의 보전보다는 빈곤의 퇴치, 식량의 확보, 건강, 천연자원의 관리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경제발전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지구환경의 파괴는 선진국의 무분별한 산업화에 기인하므로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개도국의 환경보전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고 경제발전 대신 지구환경보호만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절대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개도국은 환경보전보다 경제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이 두가지 주장을 조화시키느냐가 오늘날 온 인류의 최대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환경법은 그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단순한 환경보전보다는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경제발전 즉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그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환경법이라는 용어보다는 국제지속가능발전법(International Law of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날 국제환경법의 최대 관건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즉 지구의 환경보전과 인류의 경제발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

## 【ABSTRACT】

#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oe, Myong-Jo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s developed very rapidly in recent yea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nferenc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ccelerating this development.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WSSD) in 2002 reaffirmed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adopting the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lan of Implementat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s dealt with the problems relating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the Gabcikovo-Nagymaros Case in 1997, and the members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dopted the 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of Disputes relating to Natural Resources and/or the Environment in 2001.

In recent years, many multilateral environmental treaties have been adopted, thu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y include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of 1997, the 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of 1997,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f 2001,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of 2000,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of 1998,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of 2001, and 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of 1999.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has attempted to codify the law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but without success. Instead, it adopted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in 2001. In the U.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Case, the WTO Dispute Settlement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both decided that the U. S. acts of prohibiting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GATT rules in 1998.